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대한약사회장

(경유)

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 관련 질의 회시

1. 관련: 대한약사회 총무 2018-199호(2018.02.26.)
2.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, 위 문서를 통해 귀 기관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.
3. 질의
 - 질의 배경
 - 대한약사회 본회 산하에는 각 시도 지부 약사회가 설립되어 있으며, 시도 지부 약사회 산하에는 각 시·군·구 약사회가 있음
 - 개별 약사회의 회장 선출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및 인사노무회계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
 - 질의 사항
 - 위와 같이 본회 산하의 각 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·군·구 약사회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하나의 '사업' 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(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)되는 경우,
 - 개별 약사회(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·군·구 약사회)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
4. 회시
 -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(주)입니다.
 - 구체적으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며,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입니다.
 - 귀 기관의 조직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
 - 개별 약사회(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·군·구 약사회)들이 본회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(주된 사업장 관리번호)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 - 다만, 실제 지급은 근로자수 30인 미만 여부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, 최저임금 준수 등 다른 지원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5.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(정동준 주무관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끝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
주무관

정동준

행정사무관

최충운

팀장(부이사 전결 2018. 3. 8.
관) 박일훈

협조자

시행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 (2018. 3. 8.)
단-363

접수

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(장교동 1 장교빌딩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2-2004-7355 팩스번호 0505- / bull728@korea.kr / 비공개(5,6)